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정혜경 의원)

의안 번호	20-144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9 . .

발 의 자 : 정혜경, 강명숙, 김기석,
김영미, 김진천, 이민석,
이필레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의 일부 조항의 단순 재기재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실태조사 등(안 제7조)

- 안 제7조제2항 삭제

3. 관계법령

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

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

4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5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20. 10. 15. ~ 2020. 10. 19.

나. 붙임 :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실태조사 등)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7조(실태조사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제7조(실태조사 등)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

- 제3조(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17.>
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③ 실태조사의 시기, 대상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
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 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김명선
연 락 처	02-3153-8832